

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연결법인별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	--	---------	--

1.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

① 과 세 표 준		세 율	② 세 액
구 분	금 액	20%	
③ 법인세 감면세액			
④			
⑤ 소계			

2.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

⑥ 구 분	⑦ 감 면 내 용	⑧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	코 드	⑨ 감 면 세 액 (소득금액)	비 고
⑩ 비과세	⑩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604	()	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
	⑩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	제13조의4	62Q	()	
	⑩③		606		
⑪ 소득 공제	⑪④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	제55조의2제4항	460	()	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
	⑪⑤ 주택임대소득공제(연면적149㎡ 이하)	제55조의2제5항	463	()	
	⑪⑥				
	⑪⑦		458		
⑫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			6A1		(과세표준+소득금액) ×세율-산출세액
⑬ 세액 감면	⑬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	제21조	123		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란 해당 금액
	⑬⑨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	제22조	103		
	⑬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92		
	⑬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3A		
	⑬⑫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13B		
	⑬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	제62조제4항	13F		
	⑬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	제85조의2	11A		
	⑬⑮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L		
	⑬⑯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M		
	⑬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	13I		
	⑬⑱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제96조의2	13N		
	⑬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8	181		
	⑬㉒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9	182		
	⑬㉓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1호·제3호·제5호	197		
	⑬㉔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2호·제4호·제6호	198		
	⑬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0제1항	11C		
	⑬㉖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1제1항	11G		
	⑬㉗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A		
	⑬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2	17B		
	⑬㉙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H		
	⑬㉚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2	13V		
	⑬㉛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8	13P		
	⑬㉜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9	13Q		
	⑬㉝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17제1항 제1호·제3호·제5호	13R		
	⑬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1제1항	13U		
	⑬㉟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0제1항	13T		
	⑬㊱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33	1D1		
	⑬㊲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33	1C1		
	⑬㊳		164		

⑭ 세액 공제	⑬⑦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	구 제5조	131		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·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
	⑬⑧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7조의4	14Z		
	⑬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	제8조의3제1항	14M		
	⑬⑩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제8조의3제2항	18D		
	⑬⑪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3항	18L		
	⑬⑫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4항	18R		
	⑬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3	14T		
	⑬⑭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4	14U		
	⑬⑮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	18E		
	⑬⑯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제19조	18H		
	⑬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2호	177		
	⑬⑱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3호	14A		
	⑬㉑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4호	142		
	⑬㉒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5호	136		
	⑬㉓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6호	135		
	⑬㉔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4	14B		
	⑬㉕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5	18B		
	⑬㉖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기본공제)	제25조의6	18C		
	⑬㉗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추가공제)	제25조의6	1B8		
	⑬㉘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25조의7	18I		
	⑬㉙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	제26조	14N		
	⑬㉚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	제29조의2	14S		
	⑬㉛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3제1항	14X		
	⑬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제29조의3제2항	18J		
	⑬㉝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4	14Y		
	⑬㉞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5	18A		
	⑬㉟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7	18F		
	⑬㊱ 통합고용세액공제	제29조의8	18S		
	⑬㊲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	제29조의8	1B4		
	⑬㊳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복귀)	제29조의8	1B5		
	⑬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14	14E		
	⑬㊵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1항	14I		
	⑬㊶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2항	14K		
	⑬㊷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4항	14R		
	⑬㊸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22	140		
	⑬㊹ 석유제품 전차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5	14P		
	⑬㊺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	제126조의7제8항	14V		
	⑬㊻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122조의4	14W		
	⑬㊼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제104조의30	18M		
	⑬㊽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32	10C		
	⑬㊾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제13조의3제1항	18N		
	⑬㊿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	제13조의3제3항	18P		
	⑭①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96조의3	10B		
	⑭②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99조의12	18Q		
	⑭③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3W		
	⑭④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B1		
	⑭⑤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3X		
	⑭⑥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B2		
	⑭⑦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Y		
	⑭⑧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3		
	⑭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15	1B6		
	⑭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7	1B7		
	⑭⑪		165		
⑮ 감면세액 합계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.

1.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: ⑮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2. ⑫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⑨ 감면세액란: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(개별귀속액)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(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)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3. 그 밖에 ⑩ 비과세, ⑪ 소득공제, ⑬ 세액감면 및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
※ 근거 조항 중 "구"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.